

# 加工食品의 標準化制度 解說

朴 武 鉉

〈農水產物流通公社 綜合食品研究院〉

## 1. 序 言

1984年 國務總理室 主管으로 추진된 加工食品의 管理制度 改善計劃에 따라 農水畜產 加工食品의 許可, 檢查, 監督業務를 保社部로 一元화하고 農林水產部는 加工食品의 成分, 品質管理를 위한 品質公認制度(KS)를 實시하도록 한 政府 部處間 業務調整 방침에 따라 工業標準化法施行令을 改正('86.4.8. 大統領令 11884號)하여 食品分野 KS業務를 工振廳으로부터 農林水產部로 移管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6.9.23 農林水產部 告示 제 86-29호로 加工食品의 標準化에 관한 運營要綱을 制定, 告示하여 食品의 KS業務를 農林水產部가 本格遂行하게 되었다.

工業振興廳에서 遂行하고 있는 KS業務中 移管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農水畜產物 加工食品 分野의 KS業務 전반에 관한 ① KS規格의 制定, 改正, 廢止 등의 業務, ② 規格管理를 위한 審議會(部會, 專門委員會)構成 및 運營, ③ KS表示品目指定 및 表示許可業務, ④ 規格의 普及, 教育, 弘報를 통한 標準化造成業務 등이다.

그리고 農水畜產 加工食品의 범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表 1. 農水畜產 加工食品의 範圍(施行令第33條6)

區 分	品 目
農產物加工食品	麵類, 과자類, 茶類(人蔘茶, 커피, 코코아를 除外한다), 飴類, 醬類, 調味食品(化學的 合成品을 除外한다), 두부類, 澱粉, 果菜類 또는 穀類飲料, 통조림 또는 병조림, 穀粉類
水產物加工食品	魚肉軟製品, 통조림 또는 병조림, 加工海藻類, 塵天, 魚貝類冷凍品
畜產物加工食品	乳製品, 乳處理品, 魚肉製品類, 알加工品, 통조림 또는 병조림, 아이스크림類
其他農水畜產物加工食品	營養食品, 스프類, 食用油脂, 건포類 절임食品類 및 商工部長官이 農水產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로 定하는 農水畜產物 加工食品

## 2. 業務 추진 방향

農林水產部가 설정한 規格管理業務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基本方向

- 食品의 特殊性(流通條件, 等級化)을 반영한 規格의 制定 및 改正을 하도록 하고
-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주요 加工食品

의品質을先進國水準으로提高하고자하며

○ 국내 업계의加工技術向上과 국산원료需給 상황 및 소비실태를 고려하여 국내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 나. KS對象品目 選定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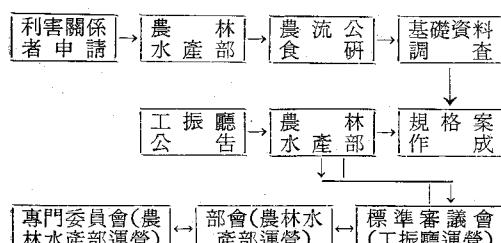
○ 規格制定 및 表示하가 品目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나 생산자의 희망신청 품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① 消費者信賴底位品目 ② 品質 식별이 어려운 品目 ③ 올림픽대비 品質改善 및 高級化 必要品目 ④ 食糧자원의 効率的利用 可能品目 ⑤ 常時流通量이 많은 品目 ⑥ 他食品의 品質에 영향이 큰 原料性食品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3. KS業務의 内容 및 節次

#### 가. 規格制定(運營要綱 第6, 8, 9條)

새로운 食品標準(規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1) 節次



##### 2) 規格案作成 제출

○ 관계 정부기관이 規格案을 作成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對象品目을 먼저 선정하고國內外 技術水準 및 生產品 實態調査를 거친 후 국가연구기관(農流公食研)의 시험을 거쳐案을 作成, 심의회에 제출하며

○ 일반 利害關係者가 규격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接受時 規格案에 대한 說明書와 함께 公認된 學會, 研究所 또는 試驗檢査所의 檢討意見書를添附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3) 審議

○ 方向: 국민경제의 全體的인 見地에서 관계부문간의 의견이合理的으로調整되고 生產能率의 提高와 함께 消費者保護가 強調되는側面에서 檢討한다.

○ 方法: 農林水產部長官이 工業標準審議會에 審議의뢰하면 심의회위원장은 즉시 食料品第2部會에 回付 食料品第2部會(더욱具體的인 檢討가 必要한 경우에는 해당 專門委員會)에서 調查 심의한다.

##### 4) 公告

審議會에서 審議完了된 規格이 農林水產部長官에게 通知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規格案으로確定한 후 工業振興廳長에게 公告依頼하여 工業振興廳長이 이를 공고함으로써 韓國工業規格(KS規格)으로서의 效力を 지니게 된다.

#### 나. 規格改正, 確認 및 廢止(運營要綱 第7條)

Food標準을 制定(보는 改正, 催認)한 날로부터 5年 또는 必要時 標準審議會에 回附, 審議를 거쳐 規格의 適否를 확인하고 必要時 改正 또는 廉止하도록 하고 있다.

##### 1) 節次

規格制定 節次와 동일함.

##### 2) 審議 및 公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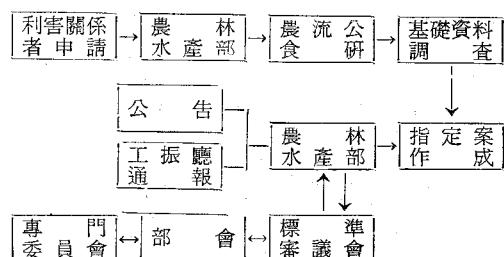
規格制定의 경우와 동일함.

#### 다. 表示指定(表示許可 對象品目 指定)

##### (運營要綱 第11, 13條)

KS表示許可를 위한 先行條件으로 KS規格이 制定된 品目中 農林水產部長官이 消費者保護와 食品產業發展을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利害關係者の 要請이 있을 경우 KS表示許可 對象品目으로 指定하도록 하고 있다.

##### 1) 節次



## 라. 表示許可(運營要綱 第5章)

KS表示 指定品目을 生産하는 차가 KS표시 허가를 받고자 申請할 경우, 製品의 品質, 製造工程, 流通實態 등을 審查基準에 依據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認定될 때 KS마크를 製品의 包裝 등에 表示하도록 하여 KS品質水準의 製品임을 정부가 保證하는 것이다.

### 1) 概 要

우리들 주위에서 대량으로 生產되는 수많은 製品을 購入하고자 할 때 製品의 品質이 어떠한지, 과연 믿을 수 있는 製品인지 등 실제로 消費에 必要한 事項을 한눈에 알기란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生產者에게 이러한 内容을個別的으로 선전하게 하거나 製品에 記載하도록 할 수 있는 方法도 있으나 第3者의 中立의이고 客觀的인 判斷을 할 수 있는 權威있는 機關에서 商品이 일정한 條件에 滿足하고 있다는 것을 消費者에게 認證해 주는 것이 信賴度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品質의 識別도 훨씬 容易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規格表示制度란 이러한 基礎 위에서 當該 製品이 規格에 適合하게 製造되었다는 것을 특별한 表示에 의해 政府기관에서 認證하는制度인 것이다.

이러한 規格表示制度는 政府次元에서 實施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國家內의 標準化團體에 의해 遂行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우리나라와 日本을 들 수 있으며 後者の 代表的인 예로는 西獨, 英國,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標準化制度의 一環으로 表示許可制度를 採擇, 運營하고 있는 대부분의 國家는 制定된 規格의 活用을 促進시킴으로써 全體的인 經濟效用과 더불어 生產과 流通에 있어서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規格에 適合한 製品에 대하여는 特別, 表示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것이 規格製品임을 認證하는, 이른바 規格表示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이러한 規格表示制度는 先進工業國家로부터 採擇, 實施되어온 이래 產業發展 및 消費者保

護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工業標準化法이 制定된 후인 1963年부터施行되어 오고 있다.

### 2) 特 徵

KS表示許可是 申請者的 自發的인意思를 基礎로 이루어지는 行政行爲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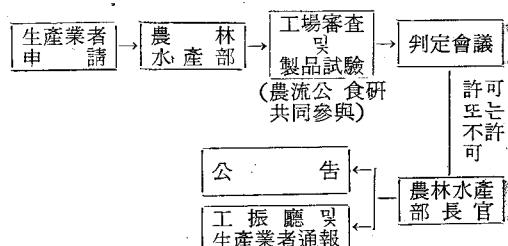
○ KS表示許可의 對象은 工業標準法上의 加工食品 또는 加工技術이 된다. 따라서 KS規格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형의 用語, 記號, 單位, 또는 試驗方法 測定検査方法 등은 그 對象이 되지 않는다.

○ 表示指定節次가 선행된 후 행하여진다.

○ 製造業者의 自由意思에 의한 申請을 개초로 공장별로 行하여진다.

○ 許可與否의 判定은 관계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決定되어진다.

### 3) 節 次



### 4) 表示許可申請(運營要綱 第14條)

#### 가) 對 象

○ 工業標準化法에 의해 表示, 制定된 鎭工業品을 生產하거나 加工技術을 使用하는 者.

○ 許可申請單位는 개개의 工場으로서一般的인 「會社」의 意味와는 區別되는 것이며 形態는 個人 또는 法人을 不問한다.

○ 外國製造業者の 경우에도 KS表示承認을 얻기 위해 申請이 可能(1982. 12. 31. 工業標準化法 改正)하다.

#### 나) 申請書類

工业標準化法 施行規則 別紙 第4號 書式 「韓國工業規格 表示許可申請書」에 다음 書類를添附하여 農林水產部에 提出 申請하여야 한다.

○ 生產業體의 製造設備 및 檢查設備의 目

錄 또는 가공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 檢查方法 및 品質管理方法을 記載한 書類.

그러나 이미 KS表示許可를 받은 工場에서 許可받은 品目 이외의 다른 品目 또는 許可받은 品目과 同一한 規格에 속하는 다른 종류, 等級, 號稱의 것을 追加로 신청하는 경우 이거나 또는同一工場에서 2件 이상의 表示許可를 同時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하다.

#### 다) 申請手數料

- 3萬원의 申請手數料를 政府 수입인지로 納付하여야 하며

○ 同一工場이 2件 이상의 表示許可를 申請하는 경우 1件에 대하여는 手數料全額을 그 외의 件에 대하여는 半額을 納付하도록 하고 있다.

#### 라) 申請書類 檢討(運營要綱 第15條)

- 檢討機關: 農林水產部 流通課

○ 書類內容의 檢討 결과 補完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바로 반려하지 않고 이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 일정한 기간(10日) 이내에 補完하여 提出토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내에 補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表示許可申請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 表示許可申請의 포기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서류를 提出한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며 이 때에도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 그러나 表示許可申請이 接受되어 이미 工場審查 또는 製品試驗을 實施한 후에는 申請의 철회가 認定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措置한다.

○ 서류검토가 완료되고 신청인의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工場審查計劃을樹立하고 공장 심사 日字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5) 工場審查(運營要綱 第16條)

##### 가) 目的 및 必要性

○ 當該 申請工場이 KS規格에 적합한 제품을 生產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水準에 있는

가의 能力を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 신청공장이 管理, 保有하고 있는 技術的 生產條件을 심사함으로써 當該 工場의 責任下에 生產하는 製品이 KS規格 水準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 나) 審查官의 構成

- 農林水產部長관이 선정하며,

○ 一定한 資格이 있는 農林水產部 所屬 공무원과 農水產物流通公社 綜合食品研究院 등 관련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選定한다.

- 보통 2~4名으로 구성된다.

다) 審查 기간: 신청공장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라) 審查方法

○ 2개월간의 管理記錄 實績을 토대로 當該 品目別로 정해져 있는 表示許可 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사(다만, 表示命令 品目과 전량 官納 위주 품목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特別한 경우에는 2개월 미만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해서도 실시 可能).

○ 심사기준 7個項目 중 標準化一般, 流通 管理事項은 체크리스트식으로 심사하며 資材 management, 工程管理, 製品의 品質管理, 製造設備事項, 檢查設備事項은 該當 點檢 항목별로 필 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기술적으로 평가한다.

##### 마) 工場審查 内容

○ 運營要綱 第13條에 依據 作成된 「表示許可심사기준」에 依據 실시하며 심사방법은 「적 합성 檢討要領」에 의거 실시한다.

##### 바) 工場審查의 特例

모든 KS表示 許可申請工場에 대하여는 工場審查를 하는 것이 必須不可缺의 要件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工場審查를 省略토록 함으로써 重複된 努力を 피하여 能率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工場審查의 本質은 當該工場의 社內標準化 狀態, 品質管理상태 등으로 미루어 규격제품에 대한 保證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 확인에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重複되는 工場審查를 免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S表示許可 후, 1년 이내에 當該工場에서 다른 品目에 대해 許可를 신청한 경우 既許可時 심사한 項目과 중복되는 항목은 공장심사 시 이를 省略할 수 있다. 이는 이미 許可를 받은 工場이 特定品目에 대해 許可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른 品目에 대해 추가로 表示許可를申請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후에는 제품검사만을 행할 수 있다.

KS規格은 個別品目 또는 種目別로 이것이 다시 수개의 종류(等級) 또는 호칭으로 區分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개의 종류나 등급 또는 號稱으로 分類되는 개개의種類는 製品의特性을 除外하고는 資材라든가 工程 등 品質保證에 必要한 관리조건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工場심사는省略하고 製品에 대한 試驗結果만을 토대로 許可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製品의 品質試驗(運營要綱 第17條)

KS表示許可의 최종결정은 이상에서 說明한 工場審查結果와 實제 生產製品의 品質試驗結果를 토대로 檢討하게 된다.

##### 가) 시료의 채취

製品의 品質試驗을 위한 시료는 工場審查時 심사관이 이를 채취한다. 채취하는 시료의量은 개개의 品目(種目)別로 表示許可 審查基準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되나 대부분이 製品의 시험성격이 許可與否에 큰影響을 미치므로 運送過程에서의 變質 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특별한 取扱을 要한다. 따라서 工場審查官은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特定業體의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措置를 취하고 봉인한 후 試驗기관까지 직접 운반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시료의 운송과정에서 破損, 變質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試驗機關에 택송해도 무방하다.

##### 나) 試驗分析

시료에 대한 品質試驗은 外部公認 試驗機關에서 행한다. 外部公認 試驗機關이란 KS規格의 試驗, 分析을 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必要한 設備를 갖춘 公認 試驗機關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성질상 운

반이 곤란하거나 관련 연구검사기관의 施設未備 등 外部試驗依賴가 곤란할 경우에는 當該工場에서 現場試驗도 가능하다.

#### 7) 審查報告(運營要綱 第18條)

工場審查官이 工場審查를 完了하고 채취한 시료를 試驗機關에 試驗依賴한 후에는 각 審查項目別로 審查한 内容을 토대로 審查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고서 내용中 當該工場에서 直接 記載해도 무방한 事項에 대해서는(예: 檢查方法, 管理方法, 設備의 제원, 性能, 精密度 등) 許可申請時 當該工場에서 作成, 提出토록 하고 工場審查時 現地에서 이를 確認, 審查할 수도 있다.

#### 8) 判定(運營要綱 第19, 20條)

工場審查報告書가 作成되고 製品에 대한 試驗成績에 대한 결과가 試驗기관으로부터 通報되면 이를 첨부하여 判定會議 또는 운영회의에 上정하여 심의한 후 KS表示許可 與否를決定한다.

##### 가) 判定審議機構

KS表示許可 與否를 客觀的이고 合理的으로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產部와 外部專門家 등이 委員으로 委嘱되어 있는 判定會議는 審議對象品目이 최초로 KS表示許可를 申請한 品目이거나 처음으로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開催되는 것으로 判定會議의 性格은 工場審查官의 심사결과보고를 토대로 許可與否에 대한 行政部處의 許可, 不許可의 최종決定에 앞서各界 意見의 수렴을 目的으로 設置된 審議, 諮問機構이다.

判別會議는 主務局長과 農林水產部長官이 지명한 關係官, 部會 및 專門委員 중에서 9~11人으로構成되어 主務局長이 議長이 되며 議決은 在籍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賛成으로 審議, 議決한다.

이미 KS表示許可를 받은 工場이 다른 品目에 대해서 KS表示許可를 申請한 경우에 대한 表示許可 與否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운영요강 제38條)

運營會議의 構成은 農林水產部의 擔當課長,

關係課長, 農流公 綜合食品研究院 등. 관련 연 구검사기관의 關係官 등으로 構成되어 담당과장이 議長이 되며, 議決은 判定會議와 동일하다.

이상의 判定會議 또는 運營會議에서 심의하게 되는 경우는 판정기준에 의한 評價 결과 일정한 水準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製品에 대한 試驗分析結果가 KS基準에 미달인 경우에는 判定會議 또는 運營會議의 절차를 생략하고 不許可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나) 判 定

KS表示許可 與否의 判定은 別途로 정한 運營要綱 別表 3의 審查基準에 의한 適合性 檢討要領에 따라 許可 또는 不許可의 判定을 내린다.

판정기준에 의한 評價 결과 KS水準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認定된 경우에는 許可하고 KS水準에 未達된 경우에는 不許可의 決定을 하게 되나 다만 不合格 内容이 外觀, 重量, 表示事項의 漏落 등 未達事項이 경미하고 製品의 特性上 크게 重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改善期間을 부여(運營要綱 第20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留保判定制度가 있다.

許可 또는 不許可의 判定基準을 간단히 소개하면 앞에서 이미 說明한 標準化 一般事項부터 檢查設備에 이르기까지 7개의 심사항목을 각각 A, B, C로 評價하여 A가 3개 이상

이고 C가 없는 경우 이를 合格基準으로 한다. 표준화 일반사항은 이를 6個 細項目으로 나누고 각각 細項目別로 「가」, 「나」, 「다」로 부분 평가를 한 결과 細項目의 評價結果가 「가」水準인 경우 a, 「가」가 포함되고 「다」가 없는 경우 b, 「다」가 포함되는 경우 c로 評點하여 a가 3개 이상인 경우 A로, a가 2개 이상이고 c가 없는 경우 B로, c가 포함되는 경우 C로 판정하고 合格基準은 B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유통관리사항도 이를 8개 細項目으로 나눈 다음 標準化一般과 같은 方式으로 評點하여 a가 4개 이상인 경우 A로, a가 2개 이상이고 c가 없는 경우 B로, c가 포함되는 경우 C로 판정하고 합격기준은 B 이상인 경우로 한다. 資材管理, 工程管理, 製品의 品質管理, 製造設備, 檢查設備로 각각 A, B, C로 평가하여 C가 없어야 한다.

#### 9) 許可證 交付 및 公告(施行規則 第9條, 運營要綱 第21, 22條)

이상에서 說明한 判定基準에 따라 判定會議 또는 운영회의 심의를 거친 후 KS표시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許可證을 신청공장별로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許可番號, 許可工場名, 許可品目의 規格名 및 규격번호, 종류(等級) 또는 號稱을 公告한다.

허가증은 1個工場當 1枚이며 동일한 工場이 수종의 표시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이를 동일 許可證에 一括 記載한다(運營要綱 第22條).

한 방울의 물, 한등의 전기를 아껴쓰는 마음은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마음입니다.